

1. 정오표

페이지	교재 내용	정정사항
173쪽 중간	(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로서 해당과세기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273쪽 상단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임대사업자의 직권말소, 자진말소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임대사업자등록된 것으로 본다.	삭제 (2021귀속 신고 시 2020년 직권말소, 자진말소 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대상이 아닙니다)

2. 추가설명자료 (업무용승용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조정 (업무전용보험 가입대상. 계속사업자)

차량번호	업무전용보험	업무사용비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기타유지비	합계
1 (기본1대 운행기록작성)	대상아님	80%	10,000,000	14,000,000	24,000,000
2 (추가, 운행기록 작성)	가입	100%	12,000,000	16,000,000	28,000,000
3 (추가, 운행기록 작성)	미가입	70%(35%)	12,000,000	8,000,000	20,000,000
4 (추가, 운행기록 없음)	가입	75%	12,000,000	8,000,000	20,000,000
5 (추가, 운행기록 없음)	미가입	37.5%	12,000,000	8,000,000	20,000,000

1,2,3번차량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사용거리 / 총 주행거리 (해당과세기간)

4번차량 업무사용비율 = 15,000,000 / 20,000,000 = 75%

5번차량 업무사용비율 = 15,000,000 / 20,000,000 x 50% = 37.5%

업무 사용금액		필요경비불산입 (인출) (업무 외 사용금액)			필요경비불산입(유보)
감가상각비	기타유지비	감가상각비	기타유지비	합계	감가상각한도초과
8,000,000	11,200,000	2,000,000	2,800,000	4,800,000	
12,000,000	16,000,000	0	0	0	4,000,000
4,200,000	2,800,000	7,800,000	5,200,000	13,000,000	
9,000,000	6,000,000	3,000,000	2,000,000	5,000,000	1,000,000
4,500,000	3,000,000	7,500,000	5,000,000	12,500,000	

※ 사례별 업무사용비율

-운행기록이 있고 업무전용보험 가입대상 아닐 때 = 과세기간중 업무용사용거리 / 과세기간중 총주행거리

-운행기록이 없을 업무전용보험 가입대상 아닐 때 = 15,000,000 / 승용차관련비용 (100% 한도)

-운행기록이 있고 업무전용보험 가입대상인데 가입하지 않은 경우

= 과세기간중 업무용사용거리 / 과세기간 중 총주행거리 × 50%

-운행기록이 없고 업무전용보험 가입대상인데 가입하지 않은 경우

= 15,000,000 / 승용차관련비용 × 50% (50%를 한도로 한다)

※ 업무전용보험 가입대상

직전 과세기간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대상자. 당면 복식부기 대상인 전문업종 사업자.